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도참고자료**	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1월 23일(목) 11:00 이후 사용

비 고	#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: 1.23(목) 10:30, 세종청사, 국무조정실장 ※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, 회의결과 수정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시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. * 공동배포 : 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벤처부, 금융위	
총 괄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지원팀	과장 이성도, 사무관 안수용 (044-200-2446, 2449) 팀장 김정애, 사무관 김나래 (044-200-2502, 2503)
ICT융합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과	과장 이진수, 사무관 황영휘 (044-202-6130, 6143)
산업융합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	과장 안세진, 사무관 홍석민 (044-203-4510, 4512)
지역특구	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	과장 성녹영, 사무관 남현재 (044-865-9712, 9713)
금융혁신	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	팀장 정선인, 사무관 김기훈 (02-2100-2841, 2872)

「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」
-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-

▸ **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**을 정립하고, '19년 **총 195건**의 **과제 승인**
- 당초 목표(100건) 대비 2배에 가까운 **양적 성과** 달성
- 신제품의 **시장진출 기회**를 확보하고, 사회전반에 **혁신 동력** 창출

▸ **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**로 연계하기 위한 **제도 내실화 방안** 마련
- **민간접수기구** 별도 신설, **원활한 시장진출**을 위한 금융·세제 지원
-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**효력 연장**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
- **갈등조정체계** 구축, **적극행정 원칙** 적용, **평가보상체계** 개선

□ **정세균 국무총리**는 1월 23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**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(세종↔서울 영상회의)를 주재하여,

○ 규제샌드박스 **제도 시행 1년**의 **성과를 평가**하고 **향후 보완대책**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○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**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**을 거쳐 **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1. 시행 1년의 평가

1 주요 성과

□1 **「한국형 규제 샌드박스」 모델**을 정립하였습니다.

○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**규제 신속확인, 임시허가, 실증특례** 등 **폭넓은 제도를 완비**하였습니다.

○ **ICT 융합, 산업융합, 금융혁신, 지역혁신** 등 **산업 전반**에 걸쳐 **광범위하게 시행**하고 있으며, **신속하게 심사***하고 있습니다.

*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, 영국·일본 등 외국(평균 180일)보다 빠른 심사

□2 **당초 목표**(100건) **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**를 달성하였습니다.

○ 2019년 **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**를 승인하였습니다.

○ 분야별로는 **혁신금융, ICT융합, 산업융합·지역혁신** 순이며,

	ICT융합(과기부)	산업융합(산업부)	혁신금융(금융위)	지역혁신(중기부)
195건(100%)	40건 (21%)	39건 (20%)	77건 (39%)	39건 (20%)

○ 유형별로는 **실증특례, 임시허가, 적극행정 순**으로 승인하였습니다.

실증특례	임시허가	적극행정
158건 (81%)	21건 (11%)	16건 (8%)

- **규제신속확인***은 **총 180건을 처리**하여 시장의 **불확실성을 해소**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.

*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,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

○ **승인기업의 70%가 중소기업**에 해당하여,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**혁신의 실험장 역할**을 수행하였습니다.

대기업	대형금융기관	**중소기업**	공기업
50건 (26%)	22건 (11%)	**137건 (70%)**	8건 (4%)

○ 기술별로는 **승인기업의 약 60%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**하고 있으며, **IoT, 빅데이터, 블록체인, AI**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됩니다.

App 기반	IoT	빅데이터	블록체인	VR	AI
115건 (59%)	23건 (12%)	19건 (10%)	14건 (7%)	10건 (5%)	5건 (3%)

○ 특히, 13개 시도에 **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**함으로써 **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**를 마련하였습니다.

*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**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**

3 승인기업의 **신제품·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**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

○ 전체 195건 중 **58개 과제(30%)**가 시장 출시되었습니다.

합 계	금융위(혁신금융)	과기부(ICT융합)	산업부(산업융합)	중기부(지역특구)
58 (100%)	**27건** (47%)	**16건** (28%)	**15건** (25%)	-

- 그간 **경직된 규제**로 어려움을 겪던 **신제품과 신서비스**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**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**하였습니다.

○ 시장 출시 과제는 **이용자와 매출이 증가**하고, **투자유치 및 해외진출**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
* 21개 기업, 2,500억원 신규투자 유치,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

- (국회 수소충전소) 월평균 이용자 수 34%, 매출 41% 증가 ('19.12월 2,154대 이용)
- (모바일 전자고지) 15개 기관 39종 고지서 모바일로 전환(약 2천만건, 79억원 절감)

◎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(2019.11.14.~21일, 행정연)

▸ **승인기업의 90.2%**가 규제 샌드박스 **제도에 만족**하는 것으로 나타남, 특히, **시장 진출에 도움**이 되었다는 응답(79.1%)이 1위를 차지

◎ 승인기업 대표 심층인터뷰 (2019.11.22.일)

▸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.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,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,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**(라떼아트 3D 프린터)**

◎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(2019.11.14.~28일, 행정연)

▸ 규제 샌드박스를 **알고 있다는 응답은 43.3%**로 '19년 3월(21%) 대비 **2배 증가**
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**규제완화(86.2%)와 경제활성화(80.6%), 적극행정 유도(51.2%)** 등 **혁신성장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

④ 사회 전반에 **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**하였습니다.

○ 장기간 **교착상태**에 있던 **갈등과제*를 해결하는 돌파구**로 작용하고, **공유경제, 핀테크** 등 **신산업 실험**을 진행하였습니다.

*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(DTC)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(식욕조절, 지방대사, 염증, 당대사, 에너지소모, 스트레스)의 실증연구 개시('19.12.30)

- (공유주방)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(4.29일) 부여,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·유통까지 허용(7.11일)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(On-Off 여행자보험) On/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 · 해지('19.4.17)

○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**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**되고, **국민생활 편의***를 증진하는 다양한 **혁신서비스 시장**을 **신규 창출**하였습니다.

* 모바일 운전면허증,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 · 통신 융합,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

⑤ **규제 샌드박스 효과**가 **全산업에 확산**될 수 있도록 **법령개정을 적극 추진**하고 있습니다.

○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**3개 과제***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, **14개 과제**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입니다.

*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,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,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

○ 이 밖에도 **58개 과제***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므로, 일정기간의 **실증이 종료되면 많은 성과**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* 라떼아트 3D 프린터, 대출비교 플랫폼, 공유주방, 모바일 전자고지 등

2 보완 필요사항

□ **전문가 회의, 기업 인터뷰, 규제혁신포럼**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**애로사항**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.

○ **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**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**특례기간이 종료**되더라도 **사업을 영위**할 수 있도록 **제도 개선**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
○ 또한,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**행정적 부담을 완화**하고 **부가조건을 변경**하여 **사업성을 확보**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
2. 발전방안

□ 지난해 4월과 7월,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, **시행 1년**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**종합적인 발전방안**을 마련했습니다.

1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

① **신청·접수 단계**에서 기업이 **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**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이겠습니다.

▸ **민간 접수기구 신설** ▸ **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** ▸ **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**

○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**민간 접수기구**를 통해 **신청기업**의 **접근성과 편의성**을 증진하는 동시에, **민관협력 모델**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.

-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'**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**'를 신설해 ICT융합·산업융합·금융혁신 분야 **기업의 신청**을 **직접 접수**받고, **법률자문**과 **컨설팅**을 거쳐 **부처 협의**까지 지원하게 됩니다.

-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**3개월간의 시범운영**을 거쳐 **상설 운영체계로 확대**할 예정이며, **대한상의**와 **지역상의 네트워크**를 활용한 **신청기업 지원**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.

- 그 밖에도 각 **시·도**에 **안내·상담창구**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,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**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**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○ 이를 토대로 **'DNA**(Data·Network·AI) **+ BIG3**(미래차·시스템반도체·바이오헬스)'와 같은 **유망신산업**과 **주력 제조업, 소재·부품 분야**에 대한 **규제 샌드박스 활용**도 **확산**해나갈 계획입니다.

- 특히 지난 1월 9일 개정된 **데이터 3법**(개인정보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)에 따른 **추가 수요**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**조기에 효과**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2 **심사 단계**에서는 보다 **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**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▸ **신속처리 제도 보강** ▸ **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(6개월) 폐지**

○ 유사·동일과제에 대한 **신속처리 제도**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**사업모델이 동일**한 경우에는 **접수부터 승인까지**의 기간을 **1개월 이내**로 단축하고,

○ **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**하는 **조건**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**신속한 조건변경**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**최소 실증 기간을 폐지**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**규제부처**에 **조건 완화 권한**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**재의결 없이도**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**조건변경이 가능**하도록 개선하여 **운영의 탄력성**을 높이겠습니다.

3 **실증 단계**에서는 **철저한 사후관리**를 통해 **차질 없는 실증사업**의 이행을 돕겠습니다.

▸ 全 **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** ▸ **기술·인증기준 선제적 마련**

○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**전 부처**에 '**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**'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,

○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**새로운 기술·인증기준**이 필요한 제품은 **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**이 **마련**될 수 있도록 지원해 **기준 미비**로 **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**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.

-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'**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**'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~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, **신규기준 개발**과 **제품성능 개선**을 지원합니다.

4 **법령 정비 단계**에서는 **혁신성**과 **안전성**에 문제가 없으면 **신속히 법령을 정비**해,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**사업이 중단**되는 **일이 없도록** 하겠습니다.

▸ **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** ▸ **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**

○ 신청사업이 **임시허가**로 **승인**받으면 '**법률**은 **6개월 내 국회제출**, **하위법령**은 **3개월 내 개정**'이라는 **원칙** 하에 **조속한 법령정비**를 추진해, **일반사업자**도 이른 시일 내에 **동일한 혜택**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**불가피한 사유**로 법령 정비가 **지연**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**특례를 연장**하여 **사업중단**에 대한 **불안**을 **해소**하겠습니다.

- **임시허가**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융합촉진법(산업융합)과 지역특구법(지역혁신)상의 '**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**' 규정을 **정보통신융합법**(ICT융합)에도 **신설**해 사업자 불안을 해소하고,

- **실증특례**에 대해서도 **안전성이 입증**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**법령 정비가 지연**되는 경우에는 **임시허가로 전환**하거나 **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**할 수 있도록 **법률 개정**을 추진하겠습니다.

< 참고 : 임시허가·실증특례 법령정비 지연시 대책 >

구분	현행		개선
【 ICT융합·산업융합·지역혁신 】			
임시허가	법령 정비 지연시 자동연장 (산업융합, 지역혁신)	⇨	**ICT융합 임시허가 자동연장** 도입
실증특례	1회 연장(2+2년) 후 종료	⇨	① **특례 추가 연장** (법령상 금지) ② **임시허가** 전환 (모호·불합리)
【 금융혁신 】			
혁신금융 서비스	1회 연장(2+2년) 후 종료	⇨	① **특례 추가 연장** (영업규제) ② **스몰라이센스**(임시허가) 도입 (진입규제)

○ 그 밖에 **실증특례 결과 검증**을 위한 **기준과 절차**를 명확히 하고, **종합점검체계**를 **구축**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

▸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▸ 자금·세제 지원 확대

□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, **사업화 전 과정**을 **밀착 지원**하여 승인과제의 **시장진출 촉진**에 주력하겠습니다.

○ **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**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**승인제품**은 **혁신성 평가를 면제**하고 **수의계약**을 **허용**해 **공공조달**이 특례 제품의 **초기수요**를 **견인**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**초기 사업자금 확보**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전용펀드, 우대보증 등 **지원제도를 신설**하고, **기업활력법**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**사업으로 재편**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**패키지로 지원**합니다.

- 특히 **규제자유특구**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**지역 혁신기반**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.

< 참고 :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>

자금지원	실증특례비(**최대 1.2억원**)와 책임 보험료(최대 **15백만원**) 지원, 규제자유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, 사업화·실증기반 조성비 지원
융자지원	'**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**'을 통해 최대 **0.7%p 낮은** 우대금리 융자지원
전용펀드 (신규)	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(혁신금융사업자), **핀테크·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** 조성(4년간 3,000억원 규모)
우대보증 (신규)	기술보증기금에서 **임시허가 승인**기업 대상 운전·시설 자금의 **최대 95%, 요율 최대 0.5%p 감면**, 20억원 한도로 **보증 지원**
사업재편 (신규)	「**기업활력법**」에 따라 **사업**을 **재편**하는 기업 **패키지 지원** * 절차간소화, 산업용지처분특례, 세제, 지방투자촉진보조금,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
세제지원 (신규)	규제자유특구 내 중소·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**투자세액공제율 확대**(중소 3%→5%, 중견 1~2% → 3%)
특허지원	특허출원 **우선심사**(2개월, 11개월 단축), 특허분쟁 **신속심판**(3개월, 9개월 단축)
공공조달 (신규)	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**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**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'**혁신성 평가**' **면제**
판로확보	**전문컨설팅** 지원, 전시회 참가·수출 바우처 등 **해외시장 개척** 지원

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

▸ **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** ▸ 先**적극행정**－後**규제샌드박스 원칙 적용**

□ **첨예한 이해관계**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**갈등조정 프로세스**를 운영해 **사회적 대화**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○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**주관부처별**로 **갈등조정위원회**를 구성해,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**소통과 공론의 장**에서 **합의**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**갈등조정위원회**를 활성화하고, **타 분야**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

○ **사회적 파급효과**가 큰 **핵심이슈**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'**규제·제도혁신 해커톤**'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.

□ '**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**'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**규제 샌드박스로 우회·회피**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겠습니다.

○ 규제 샌드박스 **신청 전**에 규제부처가 **적극행정**을 통해 **즉시 개선**할 수 있는지를 **먼저 검토**하도록 해 **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**도 신속하고 완전한 **시장진출**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.

- 필요한 경우 각 부처 **적극행정지원위원회**의 심의·의결을 통해 **담당 공무원**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.

○ **규제 신속확인**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여부가 **모호한 경우**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거쳐 **적극적 법령해석**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확인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,

- **특례 심의** 과정에서도 **선허용 후규제 원칙**이 적용될 수 있도록 **적극행정과의 연계**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.

□ 그 밖에,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**적용 분야**를 **확대**해 **전문적 대응**을 **강화**해나가고,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**실질적으로 평가**받고 **보상**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붙임 :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